| 번호 | | | 타워크레인 자립고 이상 설치 시 지지방법과 준수사항 |
|---|---|---|---|
| 6 | | | 제126회 제1교시 6번 · 학습용 답안 예시 |
| | | | 1. 개요 |
| | | | · 자립고: 타워크레인이 벽체·와이어로프 등 별도 지지 없이 기초와 마스트 |
| | | | 만으로 설 수 있는 높이. 기종·기초 조건·제조사 설계에 따라 다름 |
| | | | · 안전보건규칙 제142조 제1항: 자립고 이상 설치 시 건축물 등 벽체에 지지 |
| | | | 가 원칙임 |
| | | | ·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와이어로프 지지를 허용함 |
| | | | 2. 벽체 지지 시 준수사항(제142조 제2항) |
| | | | · 서면심사 서류(형식승인서류 포함) 또는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|
| | | | 설치 |
| | | | · 서류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건축구조·건설기계·기계안전·건설안전기술사 |
| | | |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, 또는 기종별·모델별 공인 표 |
| | | | 준방법으로 설치 |
| | | | · 콘크리트구조물 고정 시 매립·관통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 |
| | | | 히 지지 |
| | | | ·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 시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 |
| | | | 록 함 |
| | | | 3. 와이어로프 지지 시 준수사항(제142조 제3항) |
| | | | · 벽체 지지의 설치 근거(서면심사 서류 등 또는 전문가 확인) 조치를 동일 |
| | | | 하게 적용 |
| | | | |

| 번호 | | | · 와이어로프 고정용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 |
|---|---|---|---|
| 6 | | | ·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, 지지점 4개소 이상, 같은 각도로 설치 |
| | | | · 클립·샤클 등 고정기구(한국산업표준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)로 견고 |
| | | | 하게 고정하고 사용 중 충분한 강도와 장력 유지 |
| | | | ·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함 |
| | | | 4. 지지 작업 시 관리사항 |
| | | | ·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 작성, 계획대로 작업(제38조 제1항 제1호) |
| | | | · 작업순서 준수, 관계자 외 출입금지, 규격 볼트 대칭 결합(제141조) |
| | | | ·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 시 설치·수리·점검·해체 작업 중지, 초당 15m 초 |
| | | | 과 시 운전작업 중지(제37조 제2항) |
| | | | · 지지 후 장력·고정 상태와 벽체 고정부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|
| | | | ※ 공식 정답·채점기준이 아닌 학습용 예시임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